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안 산 시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가. 3개 법령(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을 통합하여 2015.11.23.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제정 됨.
- 나. 각각의 상위법령에서 명시한 용어 및 법령을 인용하여 조례의 조문을 명확히 하고, 각 법령에 따라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보완함으로써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 시민의 문화권 보장에 기여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상위법 근거에 맞게 규정 (안 제1조, 제2조, 제3조)
- 나. 시민 문화권 보장 및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규정(안 제5조 ~ 제6조)
- 다. 문화예술 관련 보조금 지원 사업 규정(안 제8조)
- 라. 민간 문화시설을 생활문화공간으로 제공 시 지원 규정(안 제12조 제4항)
- 마.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규정(안 제13조)
- 바. 안산문화의 날 행사 등 삭제(현행 제19조)
- 사. 위원회 존속기한 규정(안 제20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1]

5.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붙임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2]

6.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3]

7. 현행조례 : [붙임4]

8.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2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 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안산시장(문화예술과)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515)

• 전 화 : 031-481-2798

• F A X : 031-481-3205

• e-mail : jjjini777@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법 규 명 :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1】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란 「문화기본법」 제3조에 따른 문화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말한다.
5.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6.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문화를 말한다.
7. “생활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문화를 말한다.
8.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을 말한다.
9. “주민생활문화단체”, “동호회”란 유·무형의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공통의 관심사로 공유한 자발적 모임으로, 생활문화 확산의 핵심이 되는 공동체 단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 문화권 보장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시민의 문화적 삶 향상 지원

제5조(문화권의 보장) ① 시장은 시민이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라 거주지, 성별, 세대, 인종, 종교, 정치적 견해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저소득층 등 문화취약계층의 문화활동을 보장하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문화주체로서 문화창조, 문화활동 참여 및 문화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시장은 시의 각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문화가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문화예술 지원·육성 등 기반구축

제7조(문화예술의 육성) ① 시장은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문화예술 사업 및 문화예술 교육사업 그리고 축제 등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며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③ 시장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건물 등을 해당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으로 문화·예술인에게 창작 및 활동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
2. 지역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
3. 향토 문화예술 발굴·전승보존·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4. 지역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 콘텐츠 육성 사업
5. 문화적 환경 취약지역의 문화환경 개선 사업
6. 시의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개인에 대행하는 사업
7.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행사의 위탁 등) 시장은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개인에게 대행·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문화산업의 육성) 시장은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기술·인력·창업 및 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제4장 지역문화진흥

제11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산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시의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시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源)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 등 문화향유 확대에 관한 사항

7.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시의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시장은 5년마다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추진실적과 평가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생활문화진흥 지원)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포함하고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공간을 제공할 경우 시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생활문화시설
2. 그 밖에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문화예술, 전통문화, 식생활 등을 포함한 생활문화를 위하여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건립 또는 운영되는 시설

제14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시장은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가 소유하는 유휴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을 건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이거나 독점적 사용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생활문화시설의 사용 및 제한) ① 생활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시장 또는 해당 시설의 장에게 사용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시설 대관규칙을 사용자가 알기 쉽게 공시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생활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6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시장은 지역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의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성기관의 지정은 3년으로 한다.

제5장 안산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제18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시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안산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문화 정책이나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건축 및 도시계획 등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예술업무 관련 공무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20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1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자문한다.

1. 각종 문화예술정책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통 문화예술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제2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인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3.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2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2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보칙

제27조(문화예술 교류·협력) ① 시장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도시 등 국내·외 도시와의 문화예술 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우수자 등 표창) ① 시장은 매해마다 생활문화 진흥에 기여한 자(이하 “우수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문화 비용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에 있어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소관 실·과		문화예술과
입 안	실·과장 직위·성명	문화예술과장 김 정 아
	담당·팀장 직위·성명	문화종교팀장 박 향 미
자	담 당 자 성명·전화	배 세 진 (행정 2798)

【붙임 2】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2항)

1. 비용발생요인

- 비용 발생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해당 조례 개정의 취지는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사업을 직접 추진하기 위한 것이 아닌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며
-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조문 정비를 위한 것으로 추가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붙임 3】 관계법령 발췌서

문화기본법

[시행 2021. 9. 11.] [법률 제18379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개정 2017. 11. 28.>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문화정책 수립·시행상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고 문화의 창조성이 확산되도록 할 것
2. 국민과 국가의 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하고 여건을 조성할 것
3. 문화 활동 참여와 문화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문화 창조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할 것
4. 차별 없는 문화복지가 증진되도록 할 것
5.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문화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
6. 문화의 국제 교류·협력을 증진할 것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2. 1. 18.] [법률 제18769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문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17., 2013. 7. 16., 2016. 12. 20., 2018. 6. 12., 2020. 12. 22.>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관시설
 -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문화산업의 육성·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시책과 용자의 알선, 기술 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 육성시책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전문개정 2016. 2. 3.]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7. “문화지구”란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8.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2021. 5. 18.>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8.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2. 22.>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시에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12. 22.>
- ⑤ 시·도지사는 시행계획 및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지역의 생활문화진흥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문화진흥 관련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21. 6. 22.>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4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시·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군·구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시행계획 및 시·군·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源)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평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시·군·구 시행계획의 추진 실

적을 평가하고,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군·구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마다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환경 취약지역의 선정 및 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이하 “문화환경 취약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선정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관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지역 등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지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는 문화환경 취약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2.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4.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5.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
6. 그 밖에 지역문화 연구 및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에 관한 전문성
2.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실적
3. 교육인력, 시설 및 재원의 확보 여부

③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실적 및 계획
2.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과정 및 과정별 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
3. 교육인력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에 관한 사항
5. 양성기관 운영에 필요한 자원 조달계획

④ 양성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 6. 22.>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성기관에 대하여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붙임 4】 현행조례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정) 2015.11.23 조례 제194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안산시의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말한다.
5.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6.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7. "주민생활문화단체"란 지역 주민이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무형의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단체를 말한다.
8. "동호회"란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제5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산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시의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시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源)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 등 문화향유 확대에 관한 사항
 7.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② 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시의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5년마다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추진실적과 평가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안산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제6조(설치) 시장은 시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안산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관계 공무원 중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문화 정책이나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건축 및 도시계획 등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예술업무 관련 공무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자문한다.

1. 각종 문화예술정책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통 문화예술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회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3.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문화예술 지원·육성 등 기반구축

제14조 (문화예술의 육성)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 시설을 확충한다.

③ 각종 문화예술 사업 및 문화예술 교육사업 그리고 축제 등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④ 시장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건물 등을 해당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문화·예술인에게 창작 및 활동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지원대상사업)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
2. 지역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

3. 향토 문화예술 발굴·전승보존·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4. 지역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 콘텐츠 육성 사업
5. 문화적 환경 취약지역의 문화환경 개선 사업
6. 시의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개인에 대행하는 사업
7.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16조(보조금 지원 등)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행사의 위탁) 시장은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문화산업의 육성) 시장은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시설을 확충하고, 기술·인력·창업 및 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제19조(문화의 날 행사 등) 시장은 「문화기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문화의 날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공연·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제20조(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시장은 지역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소의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의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

제22조(문화예술 교류·협력) ① 시장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도시 등 국내·외 도시와의 문화예술 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생활문화진흥

제23조(생활문화 진흥)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

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문화 지원 및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1. 영 제2조에서 정한 생활문화시설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나.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생활문화센터”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생활문화시설

제25조(생활문화진흥 지원) ① 시장은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 및 이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

2.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의 규모와 확보 방안

4. 생활문화동호회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생활문화 지원의 범위)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에 대한 지원

2.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문화 전문 인력 지원

3. 생활문화 관련 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연계활동 촉진 사업

4.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생활문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학교 등 공공시설의 운영자가 다수의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에 공간을 제공할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시장은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가 소유하는 유휴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을 건립·운영하려는 자가 제4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이거나 독점적 사용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생활문화시설의 사용 및 제한) ① 생활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시장 또는 해당 시설의 장에게 사용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시설 대관규칙을 사용자가 알기 쉽게 공시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생활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30조(우수자 등 표창) ① 시장은 매 해마다 생활문화 진흥에 기여한 자(이하 “우수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문화 비용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에 있어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